



영국의 육아지원 관련 법제 현황

장혜진

(대구대학교 유아교육과 조교수)

I. 들어가며

II. 영국의 육아지원 관련 현황

1. 아동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2. 취약지역의 아동 보육기관 운영
3. 재정지원을 통한 육아지원

III. 영국의 육아지원 현안 관련 법제

1.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2. 충분한 보육시설 보장
3. 부모에게 정보 전달
4.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전달

IV. 맺으며

‘글로벌(Global)’은 글로벌(global)과 로컬(local)의 합성어로서, 교통, 통신수단 등의 발달로 생활권의 글로벌화되어 경제문제를 비롯한 환경문제, 평화문제 등에서는 국가 간 상호의존이 높아지면서도 국가를 대신하는 단위로서의 지역의 역할이 여전히 강조됨을 의미합니다. 이에 최신외국법제정보는 글로벌과 로컬의 주요 현안들을 살펴보고 시사점을 찾고자 합니다.

I. 들어가며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적 투자가 개인적·사회적인 측면에서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고 다른 시기보다 더 큰 투자가치가 있음을 입증하는 연구들이 주목을 받고 있다. 이러한 분위기 덕분에 아동 교육·보육에 대한 관심이 어느 때보다 높으며, 양육의 문제가 부모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공적 수준에서 지원해야 할 대상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많은 국가가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법과 제도를 갖추고 있으며, 기관을 통한 양육이 늘어나면서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방안으로 아동 교육·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다. 육아지원은 더 이상 가정에서 자녀를 잘 양육하도록 지원한다는 개념에 머물지 않으며, 아동의 적절한 발달과 성장을 지원하는 사회 전반의 시스템으로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

여러 국가 중에서 영국 정부는 아동의 육아를 지원하기 위해 양육비용을 감소할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으며, 교육·보육기관의 질 향상, 보육도우미를 통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등 매우 다채로운 정책을 펼치고 주목을 받고 있다. 영국 정부의 육아지원에 관련된 현안은 기본적으로 아동보육법(Childcare Act) 2006을 기본으로 하고 있다. 본 법률은 아동의 웰빙 수준을 향상하고자 하는 지방정부 혹은 다른 기관의 권한 및 책임, 보육기관이나 부모 및 다른 이해관계자에게 제공하는 정보에 관한 내용, 보육기관에 대한 규제나 점검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영국의 육아지원 관련 현안은 아동보육법 외에도 교육법(Education Act) 2011, 아동가족법(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평등법(Equality Act) 2010 등과 같은 법과도 부분적으로 연결되어 있다. 이는 영국의 영유아 교육·보육이 전통적인 교육이나 보육의 이분법적 범주에 머물지 않고 유아의 복지나 사회적 평등을 다루는 영역과 통합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본 원고에서는 영국의 육아지원 관련 현황을 먼저 알아보고, 육아지원 현안에 대한 법제를 지방 정부의 권한과 책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II. 영국의 육아지원 관련 현황

1. 아동의 교육·보육기관 이용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는 교육부에서 담당하고 있다. 영국에서 만 0-5세 아동의 교육·보육은 공식적으로 통합되었으나, 여전히 통합되지 못한 영역이 있어 완전한 통합을 이루었다고 보기 어렵다. 예를 들면, 보육기관은 아동보육법 2006을 기반으로 하고 있으나, 초등학교 내에 있는 학급은 교육법 2011에 의거하여 운영되고 있으며, 기관을 평가하는 기준도 상이하여 교사나 부모에게 혼란을 일으키는 측면도 여전히 지니고 있다.

아동이 이용하는 기관은 6가지로 구분할 수 있는데 종일제 보육시설(full day care), 기간제 보육시설(sessional), 보육도우미(childminders), 유치원(nursery schools),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primary school with nursery classes),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primary schools with reception classes but no nursery)로 나눌 수 있다.

아동이 이용하는 교육·보육서비스 기관은 2013년 기준으로 총 139,650개가 있으며, 이 중 보육시설은 122,850개로 전체 기관수의 88%를 차지한다. 유치원 및 초등학교 내 학급인 유아 교육기관은 16,800개로 거의 10년 동안 유치원,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의 수는 크게 변함이 없으나, 유치원의 수가 약간 줄어들었고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가 최근에 늘어났음을 볼 수 있다. 한편, 2014년 영국 정부는 학교가 주도하는 유치원을 더 많이 설립할 예정임을 알렸다. 일각에서는 이러한 시도가 아동 교육·보육의 학교화를 심화시킬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지만, 아동 교육·보육 본연의 놀이나 탐구 위주의 경험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표 1〉 의견 수렴을 위한 80문항¹⁾

유형	201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2007년	2006년
유치원	400	400	400	450	450	450	450
유아학급과 초등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	7,600	6,700	6,700	6,700	6,700	6,800	6,500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	8,800	8,600	8,600	8,600	8,700	8,900	9,200
유아 교육기관 전체	16,800	15,700	15,700	15,700	15,850	16,150	16,150
종일제 아동센터	450	550	800	1,000	1,000	950	700

1) Department of Education,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2014, p. 34 표를 재구성하였다.

기간제 보육시설	7,100	7,900	8,300	7,800	8,500	8,700	9,700
Before School	12,800	n/a	n/a	n/a	n/a	n/a	n/a
방과 후 클럽	13,400	10,000	9,500	7,900	8,800	8,500	7,700
휴일 클럽	7,200	7,900	7,700	6,400	6,500	5,800	6,400
보육도우미(현재 근무)	46,100	48,800	47,400	51,000	56,200	59,800	57,900
등록된 보육도우미	55,900	57,500	57,900	63,600	65,800	69,200	71,500
보육기관 전체	122,850	92,200	89,600	87,200	93,800	96,400	94,400
전체	139,650	107,900	105,300	102,900	109,650	112,550	110,550

2. 취약지역의 아동 보육기관 운영

영국의 육아지원은 아동 개인의 발달이나 이후 성공적인 학습을 도모함과 동시에 계층 간의 차이를 줄이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다양한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것은 영국 육아지원 정책에서 매우 중요한 부분이다. 아래 <표 2>에서 하위 30% 취약지역에서의 아동 교육·보육기관 운영 현황을 살펴보면, 전반적으로 기관의 수가 늘어나고 있지만 그 비율은 거의 일정하게 유지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하위 30%의 취약지역에 상대적으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는 기관은 아동센터 종일제로 2013년 기준으로 전체 대비 73%의 기관이 이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아동센터 종일제는 슈어 스타트(sure start)의 프로그램 하에 시작된 것으로 일자리센터 플러스와 건강자족지원 등의 다른 가족서비스와 더불어 출생 직후부터 만 5세를 위한 보육과 교육을 제공하고 있다. 대부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하며, 일시적 그리고 공동체 활동 등의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는데 취약계층 아동이 많이 이용하고 있다.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은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와 보육도우미로 다른 기관의 유형에 비해서 취약지역에서 활성화되어 있지 않다.

<표 2> 영국 하위 30% 취약지역의 아동 교육·보육기관 운영 현황²⁾

유형	20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수	기관비율	수	기관비율	수	기관비율	수	기관비율	수	기관비율
유치원	18,200	65%	16,000	62%	15,100	60%	20,100	68%	19,500	64%

2) Department of Education,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2014, p. 64 표를 재구성하였다.

유 형	203년		2011년		2010년		2009년		2008년	
	수	기관비율	수	기관비율	수	기관비율	수	기관비율	수	기관비율
유아학급과 초등 예비학급이 있는 공립초등학교	239,800	40%	222,000	45%	224,200	46%	222,000	47%	266,100	52%
유아학급 없이 초등예비학급만 있는 공립초등학교	47,500	15%	47,300	16%	39,600	13%	24,600	9%	34,800	13%
종일제 보육시설	209,900	26%	190,300	26%	191,000	27%	180,700	28%	186,100	30%
종일제 아동센터	18,100	73%	20,100	70%	29,100	72%	34,700	69%	34,900	70%
Before School	154,800	33%	n/a	-	n/a	-	n/a	-	n/a	-
방과후 클럽	157,600	26%	90,800	25%	94,400	26%	84,700	31%	84,800	30%
휴일 클럽	90,800	27%	120,400	35%	111,200	32%	70,000	27%	75,400	29%
보육도우미	37,200	16%	42,400	18%	46,100	19%	44,100	17%	51,500	19%

참고: '수'는 기관의 수를 나타내며 기관비율은 각 기관유형의 전체 대비 비율을 나타냄.

3. 재정지원을 통한 육아지원

영국 정부가 만 3세 아동에게 투자하는 재정은 다른 OECD 국가의 GDP 대비 평균에 비해 40%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이러한 지원에도 불구하고, 아동 교육·보육 서비스에 대한 비용은 여전히 소득 대비 높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영국에서 만 2세 아동을 유아학교에 보내는 비용은 시간당 4.34 유로로 확인되었는데 1주일에 25시간 이용하는 경우 1년에 5,600 유로를 지불하게 된다. 이는 고소득층에서도 지불하기 쉽지 않은 금액이다. 보육비용은 2003년부터 계속 증가하고 있으며, 2008년 이후로는 소득이 늘어나는 것보다 더 빠르게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다. 보육비용에 대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육아지원에서 중요한 부분이다.

재정지원 정책 중 대표적인 것은 저소득층 만 2세 유아에게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다. 이미 2013년 9월부터 저소득층 최하위 20%에 속하는 유아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갖추게 되었으며 2014년 9월부터는 최하위 40%에 속하는 아동이 재정지원을 받고 있다. 2014년 정부는 추가 예산 53.4억 유로를 투입하였으며 2015년까지 76억을 투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외에도 보육면세제도(tax-free childcare scheme), 영유아기 아동 프리미엄(early years pupil premium: EYPP)은 최근에 소개된 재정지원 정책이다. 보육면세제도는 2015년 9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며 예상 혜택가구는 약 2백만 가구에 달한다. 첫 해에는 5세 이하의 아동을 두거나 자녀가 12세 이하의 맞벌이 가구에 제공될 예정이다. 16세 이하의 장애아동 역시 대상이며, 기존의 직장지원보육과 유사한 맥락이다. 이 제도는 부모 모두 취업자인 경우, 각각의 수입이 연간 150,000파운드(약 1억 7천 만원) 미만인 경우, 부모가 세금 공제 또는 범용신용에서 세금혜택을 받지 않는 경우에 해당된다. 부모는 보육 바우처의 80%를 부담하면 정부가 나머지 20퍼센트를 부담하게 된다. 한 영유아당 최대 10,000파운드(약 1,714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이 바우처는 교육표준청(Office of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 Ofsted) 관리 하에 있는 잉글랜드, 스코틀랜드, 웨일즈, 북아일랜드의 보육기관에서 사용할 수 있다.

영유아기 아동 프리미엄은 만 3·4세의 취약계층을 지원하기 위해서 서비스 제공자에게 추가적으로 제공하는 재원이다. 2015~2016년 동안 지원하는 금액은 50,000K 유로이며 이 재원은 각 기관에서 제공하는 교육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함이다. 교육표준청은 기관이 EYPP 재원을 효과적으로 사용했는지를 검토할 것이다.

Ⅲ. 영국의 육아지원 현안 관련 법제

영국의 육아지원 현안은 크게 4부분으로 ①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② 충분한 보육시설 보장, ③ 부모에게 정보 전달, ④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전달하는 것으로 나눌 수 있다.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서비스 이용자격의 부여, 이용시간의 유연성, 질, 교육·보육기관 재정 지원 측면에서 접근할 수 있다. 육아지원 제도를 실행하는 업무는 지방정부의 권한이면서 책임이기 때문에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법률에 의거하여 명시된 부분을 중심으로 살펴보고자 한다.

1.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서비스 제공

아동을 대상으로 교육·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은 아동의 웰빙과 아동 간 불평등 해소를 위한 것임을 아동보육법2006 제1조에서 명확하게 밝히고 있다. 동법 제1조부터 제5조까지는 지방 정부와 관련 파트너가 만 5세 이하 아동의 성과, 즉 웰빙을 향상

시키고 불평등을 해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한 아동의 웰빙을 규정하기 위한 여러 영역을 명확하게 제시하였다.

아동보육법 2006의 제2조는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의 의미, 제3조는 아동의 교육·보육서비스에 관련된 지방 정부의 구체적인 책임, 제4조는 지방 정부와 관련 파트너가 함께 협력해야 하는 책임, 제5조는 동법 제2조와 제4조를 수정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하고 있다. 이와 같이 아동보육법 2006의 제1조~제5조는 아동에게 제공하는 교육·보육기관의 목적을 제시하고 이에 대한 지방 정부의 책임을 규정하였다.

제조 아동의 웰빙과 관련된 지방 정부의 일반적인 책임

- (1) 영국의 지방 정부는
 - (a) 해당 지역에 거주하는 아동의 웰빙을 향상해야 한다.
 - (b) 아래 항에 명시된 항목들에 있어서 아동 간의 불평등을 해소해야 한다.
- (2) 본 법률에서 아동의 '웰빙'은 다음과 관련있는 것으로 본다.
 - (a) 물리적, 심리적 건강과 정서적 웰빙
 - (b) 해로움과 방치로부터의 보호
 - (c) 교육, 훈련 및 오락
 - (d) 유아에 의한 사회 기여
 - (e) 사회적, 경제적 웰빙

(1) 서비스 이용자격을 아동에게 부여

지방 정부는 법률에 의거하여 만 3·4세 아동에게 1년에 38주 이상, 570시간의 교육·보육서비스를 각 아동에 맞는 시기에 맞추어 아동이 속한 지역에서 보장해야 한다. 예를 들면, 1월 1일과 3월 31일에 태어난 아동은 세 번째 생일이 지난 뒤 바로 시작하는 학기나 4월 1일부터 4월 1일과 8월 31일 사이에 태어난 아동은 세 번째 생일이 지난 뒤 바로 시작하는 학기나, 9월 1일부터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만 2세 아동의 경우에도 동법에 의거하여 38주 이상, 570시간의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진다. 하지만 아래와 같은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만 2세 아동의 생일에 따른 서비스 이용 자격 부여는 만 3, 4세와 동일하지만 두 번째 생일부터 이용 자격조건을 갖게 된다.

- 무료학교급식(free school meal) 수혜 자격을 결정하는 조건을 만족하는 경우³⁾
- 가정이 근로세공제(working tax credit)를 받고 연간소득이 16,190 유로 미만인 경우

3) Education Act 1996의 512ZB조(무료 급식와 우유 제공) 4항.

- 특수교육이 필요하거나⁴⁾ 교육·건강·보호 계획(education, health and care plan)에 관련된 확인서를 받은 경우⁵⁾
- 장애생활수당을 받는 경우⁶⁾
- 지방정부가 돌보고 있는 경우⁷⁾
- 입양, 특수한 보호자 선정, 아동이 함께 살 가족 선정 등과 같은 절차로 지방정부가 더 이상 돌보고 있지 않은 경우⁸⁾

위와 같은 자격은 외국인에게도 해당된다. 다른 나라에서 영국으로 이주하는 경우, 서비스 이용 자격을 갖춘 만 2세 아동과 모든 만 3·4세 아동에게 지방정부는 다른 아동과 마찬가지로 서비스 이용자격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취약계층 아동, 보호아동, 장애로 특수한 요구를 가진 아동, 특수교육이 필요한 아동을 위하여 유아교육·보육에 접근하는데 장애가 되는 요인을 제거하고 부모와 함께 협력하여 각 아동이 가진 잠재력을 최대한 계발하도록 지원하면서 평등과 통합의 원리를 증진시킨다. 지방정부는 아동이 교육·보육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을 보장할 때 평등법 2010에 제시된 의무를 보장해야 한다.

평등법 2010 제2장 제1절의 제4조~제12조에서는 평등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특징으로 나이, 장애, 성 전환, 결혼 및 파트너십,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나 신념, 성, 성적 취향을 나열하고, 각 특징으로 인해 차별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된다고 밝히고 있다. 또한 제6장 제1절의 제85조 1항에서는 학교와 같은 기관이 입학할 수 있는 개인을 선택하거나 학생으로 받아들이는 데 있어 차별해서는 안 된다고 기술하고 있으며, 제2항에서는 학교와 같은 기관이 학생에게 교육을 제공하거나 일종의 혜택이나 시설·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법 측면에서 차별해서는 안 되며, 교육을 제공하지 않거나 기관에서 학생을 제외하거나, 다른 손실을 끼치도록 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2) 이용시간에서의 유연성

아동이 교육·보육기관을 유연하게 이용하게끔 하기 위해 지방정부는 각 기관으로 하여금 부모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시간과 패턴을 최대한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해

4) Education Act 1996의 324조(특수교육 관련 확인서 필요).
 5)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의 37조(교육, 건강 및 보호 계획).
 6) Social Security and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의 71조(장애생활수당).
 7) Children Act 1989의 22조(지방 정부가 돌보는 아동에 대한 지방정부의 책임).
 8) Children Act 1989의 8조(각 유아의 거주, 접촉 등에 관계된 순서) 1항.

야 한다. 이러한 기본지침하에 기관은 유연한 이용시간대를 제공해야 하지만, 10시간 이상 또는 2.5시간 미만의 세션, 오전 7시 이전이나 오후 7시 이후의 세션은 운영할 수 없다. 지방정부는 부모가 최소한의 수준인 1주일 당 3일 이상, 하루 5시간씩 혹은 5일 이상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책임을 지고 있다. 또한 더 많은 주 수가 필요한 부모는 1주 당 시간 수를 줄여서 더 많은 주 수 동안 아동이 기관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다⁹⁾.

이외에도 부모가 필요로 하는 시간대에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을 알아보거나 한 기관 이상을 이용하는 아동의 교육적 경험이나 연속성의 결과를 고려하고, 각 지방의 유연한 시간대를 공개하는 것도 지방정부에서 맡고 있는 임무다.

(3) 교육·보육기관의 질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아동의 자격이나 부모가 이용할 수 있는 유연한 시간대를 보장하는 것 외에 교육·보육기관의 질 또한 정부에서 법률에 의거하여 관리되고 있다. 영국의 모든 아동은 양질의 환경에서 교육·보육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가질 수 있다. 연구결과는 양질의 기관이 더 많은 발달적 혜택을 가져옴을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결과는 특히 취약계층의 경우 더 두드러진다. 정부는 가능한 조건에서 만 2세는 교육표준청(Office of Standards in Education, Children's Service and Skills: Ofsted)의 최근 점검 결과로 '매우 뛰어남'이거나 ' 좋음'을 획득한 기관에 보내고자 한다. 아동보육법 제49조와 제50조는 교육표준청에서 실시하는 점검에 관한 사항과 점검 이후 보고서에 담아야 하는 항목을 명시하였다.

제49조 점검

- (1) 본 항은 이 장(chapter)에 의해 등록된 아동의 교육·보육기관 제공자가 등록된 기관에 적용된다.
- (2) 최고평가자는
 - (a) 본 항이 해당되는 아동 교육·보육 기관에 따라 적절한 간격으로 평가를 해야 한다.
 - (b) 주 정부가 최고평가자에게 평가를 하도록 할 때 언제나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을 평가해야 한다.
 - (c) 이 조항이 적용되는 기관에 한하여 최고평가자가 평가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때 어느 시기라도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

9) 이는 다만 기관의 여력이 있거나 부모의 요구가 충분히 많을 때 가능하다.

제50조 점검 보고

- (1) 제49조 아래 점검이 시행되고 난 뒤, 최고평가자는 아래와 같은 사항을 기술하여 보고해야 한다.
- (a) 아동 웰빙 측면에서 보는 기관의 기여
 - (b) 아동 이용기관의 질과 기준
 - (c) 아동 이용기관이 서비스를 제공하는 아동의 다양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정도
 - (d) 아동 이용기관과 관련한 리더십과 관리의 질

2. 충분한 보육시설 보장

지방정부는 취업부모를 위해 충분한 보육시설을 보장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지방정부는 지역의 보육 시장(childcare market)의 상태, 지역 상권의 상태, 보육제공자나 보육도우미의 질이나 역량을 고려해야 한다. 아동보육법 2006 제6조는 부모가 취업한 상태이거나 취업을 하지 않았더라도 취업을 위한 교육이나 훈련에 참여하는 경우 지방정부가 부모를 지원할 수 있도록 충분한 보육시설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취업부모를 위해 충분한 보육을 보장할 책임

- (1) 영국 지방정부는 합리적으로 실현가능한 수준에서 부모가
- (a) 일을 시작하거나, 일을 계속하거나, 일할 수 있도록 또는
 - (b) 이후 취업에 도움이 되는 교육이나 훈련을 받을 수 있도록 보육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부모에게 각자의 지역에서 부모의 요구조건을 충분히 보장해 주어야 한다.

이 외에도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 수업 외 보육서비스를 학교에서 제공하도록 하며 기존의 보육제공자가 자신이 운영하던 기관을 확장하고 새로운 보육제공자가 지역의 보육시장에 진입하도록 한다. 또한 지방정부는 자신이 이러한 책임을 어떻게 다하고 있는지를 선출된 협의회 구성원에게 매년 보고해야 하며 부모가 볼 수 있도록 공개해야 한다. 이 보고서에는 다양한 취약계층이나 연령별 아동이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충분한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 각 연령별 보육의 수요·공급, 가격의 적절성, 접근성 및 기관의 질, 보육기관 수준에서 나타나는 구체적인 간극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3. 부모에게 정보 전달

부모는 여러 기관 중에서 자신의 자녀에게 적절한 장소를 선택할 수 있으며 자신의

지역에 있는 여러 교육·보육기관에 대한 정보나 자녀가 기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필요로 한다. 아래 아동보육법 2006에 의거하여 지방정부는 부모가 만 2세, 3세, 4세의 학급 및 이후 유아학급에 대해 알고 있도록 해야하며, 의무교육이 시작되기 전에 15시간의 교육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부모가 계속적으로 인지하도록 도와주어야 할 책임이 있다.

제12조 정보, 조언, 지원을 제공해야 할 책임

- (1) 영국의 지방정부는 본 조항과 관련된 정보, 조언,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서비스를 수립하고 유지해야 한다.
- (2) 서비스는 부모¹⁰⁾ 나 장래의 부모¹¹⁾에게 다음과 같은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 (a) 지방정부 관할지역의 보육기관
 - (b) 지방정부 관할지역에서 부모나 장래의 부모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 시설 또는 출판물
 - (c) 지방정부 관할지역에서 아동이나 청소년¹²⁾에게 도움이 될 만한 서비스, 시설 또는 출판물

또한 표준교육청 점검 결과를 바탕으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의 질에 대해서 부모가 인지할 수 있도록 하며, 기관에 만족하지 않는 경우나 불만사항을 기관에서 적절하게 대응하지 못할 경우 불만을 제기할 수 있는 절차를 거치도록 도와줄 수 있다.

4. 서비스 제공자에게 정보 전달

서비스 제공자는 서비스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정보가 있다. 이러한 정보에는 영유아기본단계(early years foundation stage)의 요구사항, 특수한 교육을 필요로 하는 자, 장애자나 취약한 아동의 요구를 충족시키고 효과적인 안전 및 아동 보호에 관련된 것이다. 지방정부는 이러한 정보를 확보하여 기관에 전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10) 부모는 아동이나 청소년의 부모이거나 아동에 대한 양육적 책임을 가진 사람 또는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해당된다.
 11) 장래의 부모는 임신한 여성, 임신 가능성이 있는 여성 또는 임신이나 부모가 될 계획을 가진 사람을 말한다.
 12) 청소년은 18세 이상이나, 아직 20세에는 다르지 않은 사람을 말한다.

제13조 정보, 조언, 훈련을 서비스 제공자에게 제공해야 할 책임

- (1) 영국의 지방정부는 정보, 조언, 훈련을 다음과 같은 사람들에게 제공해야 한다.
- (a) 동법 제3장에 의거하여 등록된 서비스 제공자
 - (b) 동법 제3장에 의거하여 등록하고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
 - (c) 각 지역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 (i) 공립학교
 - (ii) 교육법 1996 제342조에 의거하여 주정부가 인정한 학교
 - (iii) 독립적인 학교
 - (d) 학교 수준에서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려고 하는 자
 - (e) 위 (a)와 (c)에서 언급한 자를 보조하기 위하여 고용된 자

IV. 맺으며

영국은 최근 정책개혁(policy reform)을 통하여 육아를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이러한 제도는 기본적으로 생애 초기 시절인 아동의 발달이 이후 학업 성취나 사회적 성공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아동에게 동일한 출발점을 제공하여 사회적 불평등까지 해소시킬 수 있다는 기대감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영국의 육아지원 현안에 관련된 법제를 살펴보고 난 뒤 우리나라에 주는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육아지원을 위한 법이 아동보육법이나 교육법에 국한되지 않고 다른 법률들과 연결되어 법률이나 제도가 목적하는 바를 통합적으로 성취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평등이나 취약계층을 지원하는 데 있어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여 법률을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은 정책이나 법률의 효율성을 높이는 데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나라의 경우, 유아교육법과 영유아보육법에서 동일한 대상(예를 들어, 누리과정)을 다르게 이해하고 있기도 하다. 이는 기관마다 가진 특성이 다른데서 기인하는 문제이기도 하지만, 동일한 연령을 대상으로 하는 법률이 보다 통합적으로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취약계층을 위한 육아지원 제도가 매우 다양한 특징을 보였다. 현재 우리나라의 육아지원제도는 가정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일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모든 영유아가 같은 금액을 지원받는다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긴 하나, 상위소득 계층에 대한 지원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시각도 있다. 일률적인 지원을 하다 보니 취약계층에 대한 다양하고 세부적인 지원이 어려운 현실이다. 이러한 우리나라의 상황과 영국을 비교하면, 영국의 육아지원 제도는 연령별, 소득별로 잘 구분되어 있어 지원이 필요한 집단에

더 많은 재정지원을 할 수 있는 효율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

셋째, 법률에서 명확하게 아동보육의 목적을 제시하고 있는 점이 인상적이었다. 아동보육법 2006제1조에서 아동에게 보육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아동의 웰빙과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한 것임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서비스 제공자나 부모, 이해관계자들이 보육서비스의 목적을 파악하도록 하였다. 또한 추상적인 개념인 아동의 웰빙에 대하여 여러 해당 영역을 제시하여 아동 웰빙에 대한 이해를 도왔다.

넷째, 육아지원의 실질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지방정부의 권한과 책임이 법률에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되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지방정부로 하여금 자신의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돕고, 부모는 자신이 받을 수 있는 정보, 혜택, 권리 등을 인식하여 실제로 이용하는데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본다.

다섯째, 법률에서 아동의 평등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특징을 광범위하게 제시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사회적 평등에 대한 정부의 의지를 확인할 수 있었다. 평등법 2010 제2장 제1절에서는 평등을 위해 보호받아야 할 특징으로 나이, 장애, 성 전환, 결혼 및 파트너쉽, 임신 및 출산, 인종, 종교나 신념, 성, 성적 취향을 제시하였다. 이는 아동보육법 2006과 연결되어 각 특징으로 인해 아동이 차별받거나 무시당하거나 괴롭힘을 당해서는 안 됨을 명시하고 있다. 한편,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인식이 다름도 알 수 있었는데, 우리나라에서 다문화가정 유아는 보호받아야 할 특징을 가진 집단이라기보다는 추가적인 지원을 해야 할 집단으로 보고 있다. 이는 다문화를 바라보는 패러다임 자체가 다름을 알 수 있다. 전반적으로 사회적 평등에 대한 인식 수준이나 실천 의지가 높음을 엿볼 수 있었다.

국가마다 아동교육·보육에 관련된 역사나 사회·문화적 배경이 다르기 때문에 영국의 육아지원 현안에 관련된 법제를 비판적 의식 없이 수용하는 것은 지양해야 한다. 영국의 육아지원 정책이 위로부터의 정부 주도 개혁으로 비판을 받기도 하고¹³⁾ 영국의 유아교육·보육이 여전히 완전 통합되지 않은 상태로 있어 현상이나 부모에게 혼란을 초래한다는 점에서 더욱 신중히 접근해야 한다. 하지만, 정부의 역할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고, 법률 간에 공통적인 기준을 적용하고, 육아를 지원하는데 있어서 아동의 발달과 사회적 평등을 동시에 고려한다는 점은 의미있는 시사점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13) 윤은주·이진희, “위에서 아래로의 유아교육 질 향상에 대한 우려: 영국유아교육개혁의 교훈”,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2011, 293-311.

참고문헌

윤은주·이진희, “위에서 아래로의 유아교육 질 향상에 대한 우려: 영국유아교육개혁의 교훈”, 열린유아교육연구 16(5) 2011.

장혜진, “영국의 육아정책 동향”, 육아정책포럼 제42호, 2014.

Department of Education, Childcare and Early Years Providers Survey 2013, 2014.

GOV. UK, Policy: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Issue and Actions), 2013a.

GOV. UK, Policy: Improving the quality and range of education and childcare from birth to 5 years(Tax-free childcare scheme), 2013b.

Childcare Act 1989 a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89/41/contents>.

Children and Families Act 2014 a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4/6/contents>.

Social Security and Contributions and Benefits Act 1992 a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2/7/contents>.

Department of Education(2014. Sep). Statutory guidance: Early education and childcare.

Education Act 1996 a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1996/56/contents>.

Equality Act 2010 at <http://www.legislation.gov.uk/ukpga/2010/15/contents>.